

『구미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
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8월 25일

나. 발 의 자 : 김성현, 김상조, 김수민, 김영호, 김익수, 김정곤,
김정미, 김재상, 김춘남, 김태근, 박교상, 박세진,
박주연, 손홍섭, 윤영철, 윤종호, 이명희, 이수태,
임춘구, 정하영, 황경환 (2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8월 31일

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 성 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 (안 제3조~제4조)
-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 및 지역건설업자의 의무규정 (안 제5조~제7조)
- 근로자사역 등 확인 및 임금지불서약서 (안 제8조~제9조)
- 임금지급 확인 및 표준계약서 작성,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직접지급, 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에 관한사항 (안 제10조~제14조)
- 협조체계 구축, 자료제출 요구 및 계약특수조건 반영 등 (안 제15조~제18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, 제34조, 제36조, 제43조, 제46조 등
-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조, 제35조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
-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결

○ 본 조례안은

-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임금 및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가 체불 걱정 없이 맘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,
- 지역건설근로자를 사역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임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,

○ 주요 내용은

-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금액이상의 관급 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고, 임금지불계약서를 징구, 대가 지급을 사전 공지토록하며,
-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체불임금을 방지하는 등 공감대 형성으로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구미시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